

**공 사 시 방 서**  
(일반 · 특별)

<b>공 사 명</b>	<b>2016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공사</b>
--------------	-----------------------------

**2016. 1.**

**성 동 구**  
[공원녹지과]

# 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서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메뉴얼(서울시), 관련법규(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동구 「2016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공사」에 적용한다.

## 3. 감독원

- (1) 감독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 4. 해 석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5. 도급자의 의무

-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3)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복구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 (5)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6)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7)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본 공사 시공지구 외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9)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0)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모든 재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6. 현장 관리

-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7. 공정 및 시공계획

-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보고

- (1)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2)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 (3) 도급자는 공사 실시 상황 및 진도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9. 공사기간

-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동절기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발생품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11. 시공검사

- (1) 도급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도급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걱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도급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부 공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 공사검사

- (1) 공사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3.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 14.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 (1) 도급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 다.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주차구역은 소관기관) 등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나.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 다. 교통 제한기간은 가급적 단축하여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5) 작업장내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7) 공사시는 인접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 또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5. 사고의 보고

도급자는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 제 법규 준수

-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17. 작업시간

-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가급적 교통량 및 보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8. 사진촬영

-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 · 중 · 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이동식저장매체와 함께 준공시 제출한다.
- (2) 공사 시공중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 공사 일시중단

-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운 경우
  -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다.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라.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2)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천재지변 등 해당공사가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 연기원리를 제출할 수 있다.

## 20. 설계변경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조사 불능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조치

나.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노임 단가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예산증감요인 발생시

바. 천재지변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발주청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 여하한 내용의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 21. 이의신청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착수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 22. 공기연장

도급자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일기불량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관련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해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 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 23.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24. 공사장의 정리

공사중 발생하는 작업부산물은 즉시 반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 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3.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은 공사를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공사는 서울시 '2016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5.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도로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업시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8.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는 차도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하여 작업을 하고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공사 시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1. 작업 시행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2.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주변 교통 및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구청 관련부서, 경찰서, 전화국, 한국전력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조사를 거친 후 작업 시행한다.
13.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부산물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노선별로 가지치기후 가로수의 높이와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유도한다.
15. 가로수 가지치기는 노선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가지치기를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견본과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16. 작업시 유의사항

- 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작업을 시행하여 서울시 '2016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에 의거 가지치기 시행한다.
- 나. 본 작업 시행시 안전시설과 차량 진행표시 등을 설치하고, 작업인부에게 작업전·작업중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안전조치후 작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나.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도급자는 원상복구 및 보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다. 가지치기는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지 모형을 조정할 수 있다.
- 마. 본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유도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한다.
-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 본 작업 시행도중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물량을 증감 할수 있다
- 아.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자. 가로등,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신호등에 근접한 가로수는 가로등 방향으로 자란 가지를 가로등 불빛이 가리지 않도록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치기 한다.
- 차. 밀생지는 솎아주고 도장지, 수하지, 고사지, 피해지, 부패 가지는 제거하되 작업시 주변 건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카. 가지 절단시 수간이 갈라지거나 수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 타. 작업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하여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파. 작업시 안전요원을 전·후방에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인을 친절히 유도(통제)하고,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 하. 작업시 도로 교통통제 및 주거지주차, 불법주차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관련기관(부서)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가지치기 후 작업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보행인,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나. 도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작업 전·중·후 사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타 문구해석 등으로 인한 의견 상충시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